

운영 규정 개요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보라매 실버홈 본 요양시설의 입소정원은 38인으로 한다.

65세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자라도 노인성질환을 가진 자 중에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6개월이상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를 “장기요양대상자”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심신상태 및 요양필요정도에 따라 1등급~5등급으로 판정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하며 모집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지역기관 및 지역 주민, 입소자 보호자의 추천
- 2.기타 언론매체를 통하여 홍보
- 3.전단지를 이용한 모집 홍보
- 4.시설홈페이지 또는 Band, SNS등을 이용한 모집 홍보

(조직)

시설에는 시설장과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계약의사, 물리치료사, 요양보호사, 위생원 등 사회복지관계법령이 정하는 시설종사자 인력배치 기준에 따라 임용 배치한다.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 이하 '장기요양급여계약' 포함)

1.계약목적

가.계약을 체결하는 목적은 어르신 입소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정확히 명기하여 입소기간, 비용 등의 항목에 있어 시설과 보호자 사이에 상호권리를 보호하고, 분쟁을 사전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정신적,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입소자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2.계약기간 : 입소의뢰나 신청 시 입소기간(계약기간)을 급여제공계약서 상에 명시토록 하며, 장기요양 1, 2, 3~5등급 입소자의 경우 장기요양인증서 상의 유효기간을 확인하여 계약기간을 명기하도록 한다.

3. 계약의 해제 : 입소자가 입소규칙 및 시설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에는 계약 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이용료의 변경은 시설 운영 상황에 비추어 시설의 장이 결정하도록 하며, 변경된 비용은 지체없이 계약당사자나 보호자에게 직접 통보하도록 한다. 만일, 변경된 비용에 대하여 계약당사자나 보호자가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변경 전 비용으로 해당 월 이용료를 수납하도록 하며, 통보 후 1개월 간 변경 전 비용으로 전원 및 퇴소 기간을 제공한다.

(서비스의 내용)

급식 서비스: 입소 어르신에게 균형있고 위생적인 급식을 제공해 충분한 영양섭취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그에 따라 건강의 유지 및 관리가 가능하도록 한다.

상담 서비스: 입소 어르신과 그 가정 구성원을 대상으로 생활환경 및 건강에 관련된 제반 문제들을 상담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도움을 준다.

의료 서비스: 입소 어르신에게 각종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건강상태 체크 및 회복에 도움을 주고 재활의욕을 고취시킨다.

신체재활서비스: 기능회복훈련, 장애에 따른 부위별 치료를 통해 통증완화 및 재활의 기회를 제공하며 각종 치료 기법을 통한 개인의 잔존 능력향상을 통한 자립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다.

심리사회재활서비스: 전문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결여된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은 물론 사회성을 증진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여가활동서비스: 다양한 여가활용을 권장해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유도한다.

후생서비스: 입소 어르신들의 청경 유지는 물론 사회인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복지후생 서비스이다.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 1.입소자가 비품 또는 기물을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 훼손한 때는 이의 없이 이를 변상한다.
- 2.시설물 사용에 있어 본인 부주의로 인하여 일어난 과실에 대하여 시설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단,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보장이 가능한 사안은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한다.
- 3.시설 종사자는 시설물 관리 소홀과 위험물 방치로 일어날 수 있는 시설물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한다.
4. 가스 및 전기 안전점검은 년1회 법정업체에 의해 점검 실시하고, 소방안전점검은 동작소방서에서 검사장비를 대여하여 자체점검을 년1회 실시 후 결과자료를 제출한다.
5. 입소자가 흥기 및 자해에 이용될 수 있는 용품에 대하여, 소지할수 없도록 하며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위험성이 높은 용품에 대해서는 직원 참석하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서비스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서비스 실시 중에 시설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한다. 다만, 천재 지변, 제3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시설이 입소자 또는 계약당사자에게 배상의 의무를 진다.

가.시설 종사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입소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나.약을 잘못 투약하여 입소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입소자나 입소자의 보호자가 시설에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가. 시설 내에서 입소자가 자연 사망 하였을 때

나. 입소자가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다. 입소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라. 입소자가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마. 입소자의 직접적인 부주의로 인한 손해

바. 입소자 또는 보호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사. 입소자의 특이질환등으로 인하여 발작,입원,사망한 경우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서비스 기준)

1. 입소어르신의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
2. 입소자 또는 종사자들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은 경우
3. 다인실 이용하는 수급자의 경우 타 입소자의 피해가 예상될 경우
4. 감염성질환 및 호스피스 케어 등으로 격리가 필요한 경우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구체적인 처리절차)

1. 입소어르신의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거나 그 밖의 병원진료가 필요한 경우 보호자와 상담하여 병원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
2. 병원 진료에 따른 후송시 부득이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시설종사가 동행할 수 있으며, 가족이나 보호자가 병원에 도착하면 어르신을 인계한 후 귀가한다.

(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이 규정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운영위원회) 및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4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등)에 규정된 사항을 기초하여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체계적, 종합적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운영규정을 개정할 수 있다.